

협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10/19(화)~10/22(금)	<p>■ '10임원세미나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 : 재직이사 및 감사 39명중 28명 참석 ○ 내용 : 주요업무보고, '10년도 공제요율 인하 및 규정약관 개정
10/19(화)	<p>■ 신규 LPG충전소의 무분별 확산 방지를 위한 보도자료 배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전문신문 8개사배포 ⇒ 8개사 모두 게재 ○ 내용 : 충전사업의 영업환경 악화로 신규 충전사업 참여자의 신중한 검토 필요
10/28(목) 13:00 국회	<p>■ 국의 방문 교섭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 LPG업계 현안과 관련 업계의견 제출 및 교섭활동
10/28(목) 15:30 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	<p>■ 소형용기 직판 시범사업위원회(제5차) 참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 보급 실태논의 및 소형용기 직판제도 법제화 기본방향 검토
10/28(목) 18:00 백범기념관	<p>■ 환경정의 18주년 창립기념 및 후원행사 참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 환경정의 18주년기념 후원행사 참석, 후원금 전달
11/1(월) 18:30 화원일식	<p>■ 협회장,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회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 : 협회(회장, 부회장, 전무), 가스안전공사(사장, 안전관리이사, 비서실장) ○ 내용 <p>협회 : LPG충전업계 현안문제 및 규제완화 등에 대한 협조 요청 공사 : 분야별 실무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 마련하고 규제완화 등에 전향적 협력하겠습니다</p>
11/2(화) 10:00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	<p>■ 석유류 가격표시제 관련 지경부 회의 참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 석유류 가격표시제 고시 개정관련 업계 의견수렴 협회 : 정부의 가격표지판 고정 추진에 대한 업계의견 (애로사항) 전달
11/3(수) 11:00~15:00 서울팔래스호텔 로얄볼룸홀	<p>■ 제6회 LPG의 날 행사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자 : 지식경제부 국장, 공동주관 단체 회장, LPG업계 관계자 등 200여명 ○ 행사내용 : 협회장 개회사, 지식경제부 축사, 유공자 표창(20명), 세미나

11/5(금) 16:00 국회	<p>■ 국회 방문 교섭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 LPG업계 현안과 관련 업계의견 제출 및 교섭활동
11/5(금) 16:00 협회	<p>■ LPG충전사업 및 협회의 발전전략 연구 용역 추진협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 전문가를 통한 LPG충전업 및 협회의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
11/8(월)~9(화) 전남 목포, 목포도시가스(주)	<p>■ DME시범보급 사업 현장조사 출장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자 : 지식경제부 가스산업과, 한국가스안전공사, 협회 프로판사업팀장 ○ 내용 : 시공 결과 확인 및 시범사업 운영현황에 대한 현장조사
11/9(화) 10:00 국토해양부 404호	<p>■ 자동차관리법 입법예고 관련 설명회 참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 자동차관리법 입법예고 관련 관련업계 의견 수렴 및 정부 입장 설명 ※ 정부는 당초 모든 가스차량에 대해서 탈거에 의한 재검사 방식에서 자동차의 종류, 용기특성 등에 따라 차등규정(CNG와 LPG 재검사방법 구분)하는 협회의견 반영키로 함
11/9(화) 15:00 및 11/10(수) 11:00 국회	<p>■ 국회 방문 교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자 : 회장, 전무, 부탄사업팀장(대한LPG협회 회장, 상무 동행) ○ 내용 : LPG업계 현안문제 등 설명 및 LPG산업 지원방안 등 요청
11/11(목)~11/12(금) 로베로호텔	<p>■ 사도 사무국장 세미나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자 : 본회 임직원 및 사도협회 사무국장 20여명 ○ 내용 : 주요현안 대응방안 설명 및 사도협회 활성화 방안 등 협의
11/15(월) 10:45 지식경제부 가스산업과	<p>■ “LPG의 날” 의 “가스의 날”(가칭)로 확대개편 관련 회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자 : 지식경제부, 우리협회, 판매협회, 수입사, 도시가스협회 ○ 내용 : “LPG의 날” 의 “가스인의 날”로 확대개편에 대한 의견 수렴
11/15(월)~16(화) 제주도 한화 콘도	<p>■ DME협회 주제 분과 발표회 참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 DME사업화 추진현황 및 계획, 기술개발 현황 등 발표
11/23(화) 11:00 협회 회의실	<p>■ 제81차 자문회의 및 제3차 부탄발전특별위원회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 업계현안 및 대응방안, 부탄시장 발전방안 등 협의
11/24(수) 16:00 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	<p>■ 충전소 자율검사관련 회의 참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자 :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과, 한국가스안전공사, 공업협회, 판매협회 ○ 내용 : 협회의 자율검사 대행을 위한 LPG충전시설에 대한 자율검사 대행 규정 마련 요청
11/29~12/4 일본 동경 및 오사카	<p>■ LPG충전사업 및 협회의 발전전략 연구관련 일본 현지 공동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기관 : 일본LPG가스단체협의회 등 10여개 기관

『LPG 용기 재검사주기 연장』 관련 법령

개정내용 설명 자료

프로판사업팀

프로판업계의 숙원과제였던 LPG용기의 재검사주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고법시행규칙이 지난 5월 31일자로 개정·공포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우리협회는 용기관리에 더욱 힘써야 하는 동절기를 맞이하여 이와 관련된 법령해석 및 적용을 지정부와 협의하여 업계에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어 용기 재검사 및 폐기와 관련해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1. 개정 내용

- 업계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소비자가 싼 가격으로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안전을 담보한 수준에서 현실에 맞게 재검사 주기 개선
 - (개선 전) LPG용기는 제조 후 최초 4년, 그 이후 경과된 기간에 따라 3년·2년·1년 등 일정기간 경과 시 재검사를 받아 계속 사용
 - (개선 후) 제조 후 경과기간이 20년 미만 용기는 5년, 그 이상의 용기는 2년으로 재검사 기간을 조정
 - 다만, 20년 이상의 용기는 종전 규정에 의한 재검사받은 후 2년 적용

제조 후 경과 년수	재검사 주기	
	개선 전	개선 후
15년 미만	3년(최초는 4년)	5년
15년~20년	2년	5년
20년 이상	1년	2년

- LP 가스 사고의 근본적 차단을 위해 노후용기의 유통을 금지하도록 하는 사용연한제 도입
 - 제조 후 경과년수가 26년 이상이 경과한 용기는 충전·사용 등 유통을 금지하도록 함.

2. 개정내용 해설

〈고법 시행규칙 별표 22 비고 7 및 부칙의 관련 규정의 내용을 설명〉

1. 용기 재검사기간에 관한 적용례(부칙 제2조)
 - 용기 재검사주기 연장 대상 및 시기에 관한 법리적 해석
2. 사용연한제의 단계적 유예기간에 관한 특례 및 특례기간 종료 후 폐기 용기에 관한 법리적 해석(고법 시행규칙 별표 22 비고 7 및 부칙 제3조)
3. 경과년수 적용에 관한 해석
 - “경과년수가 일정 년수인 용기” 해석시 일정 년수가 채워지는 월을 기준
 - 예) 경과년수 20년 미만인 용기의 용기는 20년차 마지막 월, 경과년수 20년 이상인 용기의 용기는 21년차가 되는 첫번째 월

1. 용기 재검사주기 연장 대상 및 시기(기준시점 2010.5.31)

□ 제조 후 경과년수가 20년 미만인 용기

- 2010. 5. 31 기준, 충전기한 경과 여부에 따라 연장시기 결정
 - ① 충전기한이 2010. 5월 이전으로 표시된 용기는 종전의 재검사주기에 따라 검사를 받은 후 개정 규정 적용
 - ② 충전기한이 2010. 6월 이후로 표시된 용기는 개정 규정을 자동 적용
- ※ 2010. 5월 표시 용기는 재검을 받고 5년으로 연장되며, 자동연장으로 판단하여 유통하였을 경우 회수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한시적으로 법적조치 제외

□ 제조 후 경과년수가 20년 이상인 용기

- 종전의 재검사주기에 따라 재검사를 받은 후 개정규정을 적용
 - 1990. 5월 이전에 제조된 용기는 이 규정이 적용됨.

〈관련 규정 : 고법 시행규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의 재검사에 관한 적용례) 별표 22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재검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로서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재검사를 받는 용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조 후 20년 이 지난 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재검사를 받은 후부터 적용한다.

2. 사용연한제 적용 대상 및 시기

- 사용연한제 적용대상은 제조후 경과연수 26년 이상 용기이나, 수급안정을 위해 최초 3년동안은 단계적인 유예기간을 부여
 - 제조 후 28년 이상 지난 용기 : 1983년 5월 이전에 제조된 용기
 - 제조 후 27년 이상 지난 용기 : 1985년 5월 이전에 제조된 용기
 - 제조 후 26년 이상 지난 용기 : 1987년 5월 이전에 제조된 용기
 - 특례기간의 종료 후인 2013년 6월 이후 용기 폐기에 관한 해석
 - 1987년 6월 이후에 제조된 용기는 26년이 경과되는 해당 월(즉, 27년차가 되는 첫번째 월)에 각각 폐기
 - 예) ① 1987년 6월에 제조된 용기는 2013년 7월에 폐기 ② 1988년 6월에 제조된 용기는 2014년 7월에 폐기 ③ 1989년 6월에 제조된 용기는 2015년 7월에 폐기

〈관련 규정〉

○ 고법 시행규칙 별표22

비고 7 : 내용적 45L 이상 125L 미만인 것으로서 제조후 경과연수 26년 이상 용기는 폐기한다

○ 부칙 제3조

제3조(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의 폐기와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제조된 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내용적 45L 이상 125L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기는 별표 22 제1호 비고 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폐기하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다.

1. 제조 후 28년 이상 지난 용기: 2011년 5월 31일까지
2. 제조 후 27년 이상 지난 용기: 2012년 5월 31일까지
3. 제조 후 26년 이상 지난 용기: 2013년 5월 31일까지

□ 용기 충전시 충전기한 표기시 유의사항

- 폐기기한이 도래하는 용기 충전시 그 충전기한은 폐기하는 연·월로 표기

□ 기타 참고사항

- 2015년 이후에는 사용연한제를 폐지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
 - 2016년 이후에는 제조방법이 개선된 88년 이후 생산된 용기만이 유통될 것이므로, 용기의 안전성 확보가 가능

3. 업계 협조 사항

□ 적정 기한내 재검사를 받은 후 유통되도록 LPG 판매사업자 및 충전사업자 단체는 회원사에 대한 계도 등 후속조치

- 정상 유통되고 있는 용기 중 재검사 기한을 넘긴 용기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 재검사를 받도록 공문 조치 및 홍보
- 불법 용기 유통에 대하여는 공급자 의무규정을 주지시키는 한편 법적 처벌 대상(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임을 계도하고, 반드시 재검사를 받은 후 유통도록 조치

□ 관할 지자체 및 가스안전공사의 합동 단속을 강화

- 불법 유통용기 발견 즉시 재검사를 받게 하거나 폐기 조치

사용연한제 적용 대상 및 시기

구분	83.5.31	84.5.31	85.5.31	86.5.31	87.5.31	88.5.31	89.5.31	90.5.31	91.5.31
2011년	28년	27년	26년	25년	24년	23년	22년	21년	20년
2012년		28년	27년	26년	25년	24년	23년	22년	21년
2013년				27년	26년	25년	24년	23년	22년
2014년						26년	25년	24년	23년
폐기 년도	2011년 폐기	2012년 폐기	2013년 폐기	※ '87년 6월 이후 제조된 용기는 26년 이 경과되는 해당 월에 각각 폐기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 충전소 가맹점수수료 1.1%로 인하

한국LP가스공업협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08.5.1부터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당시 우리협회는 신한카드사와의 교섭을 통해 충전소의 카드가맹점 수수료를 기준 1.5%에서 개인 택시 1.4%, 법인택시 1.2%로 각각 인하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협회는 카드사의 경쟁유도를 위한 택시유류구매카드제의 복수사업자 참여 및 가맹점수수료 인하에 대한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기존 독점사업자인 신한카드사 외에 롯데 카드사와 현대카드사를 추가사업자로 참여시켰으며, 카드사들과의 교섭을 통해 충전소의 가맹점 수수료를 1.1%까지 인하시기는데 합의하고 '10.12.1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음을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협회는 지속적인 수수료인하 교섭 및 관련제도 등의 개선을 통해서 LPG충전사업자 여러분의 부담완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카드사별 가맹점 수수료 현황

구 분	롯데카드	현대카드	신한카드
가맹점 수수료	법인택시 1.1% 개인택시 1.1%	법인택시 : 1.1% 개인택시 : 1.4%	법인택시 : 1.1% 개인택시 : 1.4%

시행일 : '10.12.1부터 시행

택시용 경유 면세 및 클린디젤자동차 세제 면면 등 3개 법안 통과 저지

한국LPG가스공업협회

최근 자동차총전업계의 최대 관심사였던 택시용 경유연료 면세법안, 클린디젤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법안 그리고 지방세 감면 법안 3개 법안을 우리협회를 비롯한 LPG업계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정기국회 통과를 저지하였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 그동안 우리협회는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지속적인 대정부, 국회 교섭 활동 등을 통해 「주행거리가 긴 택시의 특성상 환경성능이 우선적 고려사항이며, 경유 유류세는 LPG의 2.34배로 경유 면세시 세수감소 우려, 화물·버스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 면세유 부정유통 (탈세), 클린디젤자동차에 대한 규정 미비」 등 경유택시 및 클린 디젤차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제기하며 해당법률안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 국회 전문위원회도 LPG업계가 제기한 문제점을 반영하여 해당법안에 대해 부정적 검토의 견을 제시한 것과 같이 경유택시가 환경성 논란에서 벗어나려면 강화된 배기 가스기준인 '유로6'를 만족하는 수준(클린디젤차)은 돼야하나 이 기술은 2014년 전후 상용화 될 것으로 보여 경유택시도입이 당분간은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 한편, 택시를 직접 운행하는 택시노조는 "경유택시는 승차감이 떨어지고 경유 배기가 스에 의한 건강악화, 3~400만원 비싼 경유택시의 비용부담, 장시간 택시를 운행해야 하는 운전자로서 근무환경이 열악해진다."는 이유 등으로 경유택시 도입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바 있습니다.
- 앞으로 정유업계의 경유택시도입과 경유차 보급확대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LPG총전사업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회 참여와 지원, 택시업계와의 우호관계 유지에 더욱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